

1급 본부장 운영규정

제정 : 2014. 7. 28.

제1차 개정 : 2020. 11. 30.

제2차 개정 : 2021. 10. 5.

제3차 개정 : 2024. 2. 23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직제규정」에서 정한 1급 본부장에 대한 임용절차, 보수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임용) ① 직원을 본부장으로 보임할 경우에는 1급 부서장(1급 지사장 포함하며, 이하 같음)을 대상으로 응모 자격, 우대사항 등과 관련한 조건을 붙여 공개모집을 시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의한 공개모집에 의해 사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업무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1급 본부장으로 임용한다.

③ 제1항의 공개모집에 응모한 자가 없거나, 적임자로 판단되는 자가 없을 경우, 1급 부서장 중에서 사장이 적임자로 판단하는 자를 임용할 수 있다.

제3조(임기) 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「임금피크제 운영요강」에서 정한 임금피크제 적용시기가 임기종료일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금피크제 적용시기에 임기가 종료된다.

② 본부장 임기종료후에도 임금피크제 적용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석전문역으로 전환된다.

제4조(보수) 제2조에 따라 직원이 본부장으로 보임되더라도 「보수규정」에서 정한 기존 연봉표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.

제5조(성과평가) ① 성과평가는 「경영계획 및 성과평가 요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제1항의 평가결과는 차등성과연봉 산출 및 재임용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.

제6조(여비) 국내외여비는 임원에 준하여 지급한다.

제7조(이사회 출석) 1급 본부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.

제8조(상임이사 보임) 직원을 상임이사로 보임코자 하는 경우에는 1급 본부장을 역임하였거나 1급 본부장인 자 중에서 선임함을 원칙으로 한다.

[제8조의2\(상임이사 후보자 역량강화 교육 및 평가\) 삭제<2024. 2. 23.>](#)

제9조(기타사항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직원에 대한 내규를 적용한다.

부칙(제정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. 7. 28.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관련규정의 폐지) 이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「1급 본부장운영요강」은 폐지한다.

제3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제정 전에 「1급 본부장운영요강」에 의해 1급 본부장으로 보임된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보임된 것으로 본다.

부칙(1)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)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[부칙\(3\)](#)

[\(시행일\) 이 규정은 2024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](#)